



수출입기업이 알아야 할

외국환거래제도

관세청 외환조사과



Contents

1. 외국환거래제도의 개요

2. 지급과 수령

3. 위규 자을 점검

4. 기타 외국환거래

5. 외국환거래법상 처분



1. 외국환거래제도의 개요

1.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2. 외국환거래법의 체계

3. 우리나라 외환제도의 특징

4.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

5. 기관별 외국환관리 역할

1-1.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 수단적 목적

-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보장 / 시장기능의 활성화

◆ 기능적 목적

- 대외거래의 원활화 / 국제수지의 균형 / 통화가치의 안정

◆ 궁극적 목적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 ✓ 외국환거래법 제1조

※ (외환제도의 필요성) 외환시장이 투기, 불법·편법적 거래에 놓여 충격을 받거나, 시장왜곡 현상으로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정부가 최소한 범위에서 개입하여 일정한 제한

1-1.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외국환거래법 제 1조(목적)>

이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 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외국환거래법의 체계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목적, 적용범위 용어정의, 환율

제3장외국환평형기금
(제13조~제14조)

거래당사자
(개인, 업체 등)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
기관등(제8조~제12조)



해외거래자
(개인, 업체 등)

제4장 지급과 거래(제15조~제18조)
지급 절차 및 허가, 지급방법, 외화
등의 수출입, 자본거래신고 등 규정

제5장 보칙(제19조~제26조)
검사, 통보, 비밀보장, 위임 등

제6장 벌칙(제27조~제32조)
벌칙, 몰수, 양벌, 과태료 등

1-2. 외국환거래법의 체계

◆ 거래의 종류별 법령 적용 체계

구분	수출입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
원인거래	관세법·대외무역법 적용 (수출입신고·확인)	대외무역법 적용 (수출입확인)	외국환거래법 적용 (자본거래신고-18조)
결제행위 (외환거래)	외국환거래법 적용 (일반형태 - 15조, 예외형태 - 16조)		

◆ 일반적 외환거래(결제) 방법 - 법 15조

-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인거래의 증빙을 확인 후 지급 또는 수령

◆ 예외적 형태의 외환거래(결제) 방법 - 법 16조

- 상계, 기간초과 지급·수령, 제3자 지급·수령,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수령

1-3. 우리나라 외환제도 특징

- ◆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 - 6개월 범위 내에서 가능
 - 지급 · 수령 · 거래의 정지
 - 지급수단 · 귀금속의 예치 · 매각 의무 부과
 - 자본거래 허가제 및 취득 지급수단의 예치 의무 부과
 -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
 -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 - 확인 · 신고업무 등 위탁
 - ◆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원칙적 자유화) 및 사후관리 강화
 - 유사시 테러자금 등을 제외하고 허가제 폐지
 - 외환거래의 적정여부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 ◆ 위임입법 형식 -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탄력적 운영
 - 외국환거래법 - 시행령 - 외국환거래규정* : [구체적인 세부사항 규정](#)
- * 기획재정부고시, 상위법으로부터 적정 위임과정을 통해 법적효력 발휘

* 위임입법 체계 예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중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거나 통상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0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② 법 제16조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외국환거래규정 제5-1조(적용범위)>

법 제16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4.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

◆ 인적대상 :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 분		거주자	비거주자
원 칙		대한민국 내 개인, 법인	거주자 이외의 개인, 법인
개인	경제활동	국 내	해 외
	거주기간	국민 : 3개월 외국인 : 6개월	국민 : 2년이상 체재 외국인 : 3개월 체재
법인	주소지	국 내	해 외
예외조항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소속 국민	주한 외국공관 소속 외국인 주한미군, 국제기구

- 국적과는 관계없이 거주지역, 경제적 밀착성 등에 따라 결정
- 부양가족의 거주성 : 생계제공자와 동일하게 거주성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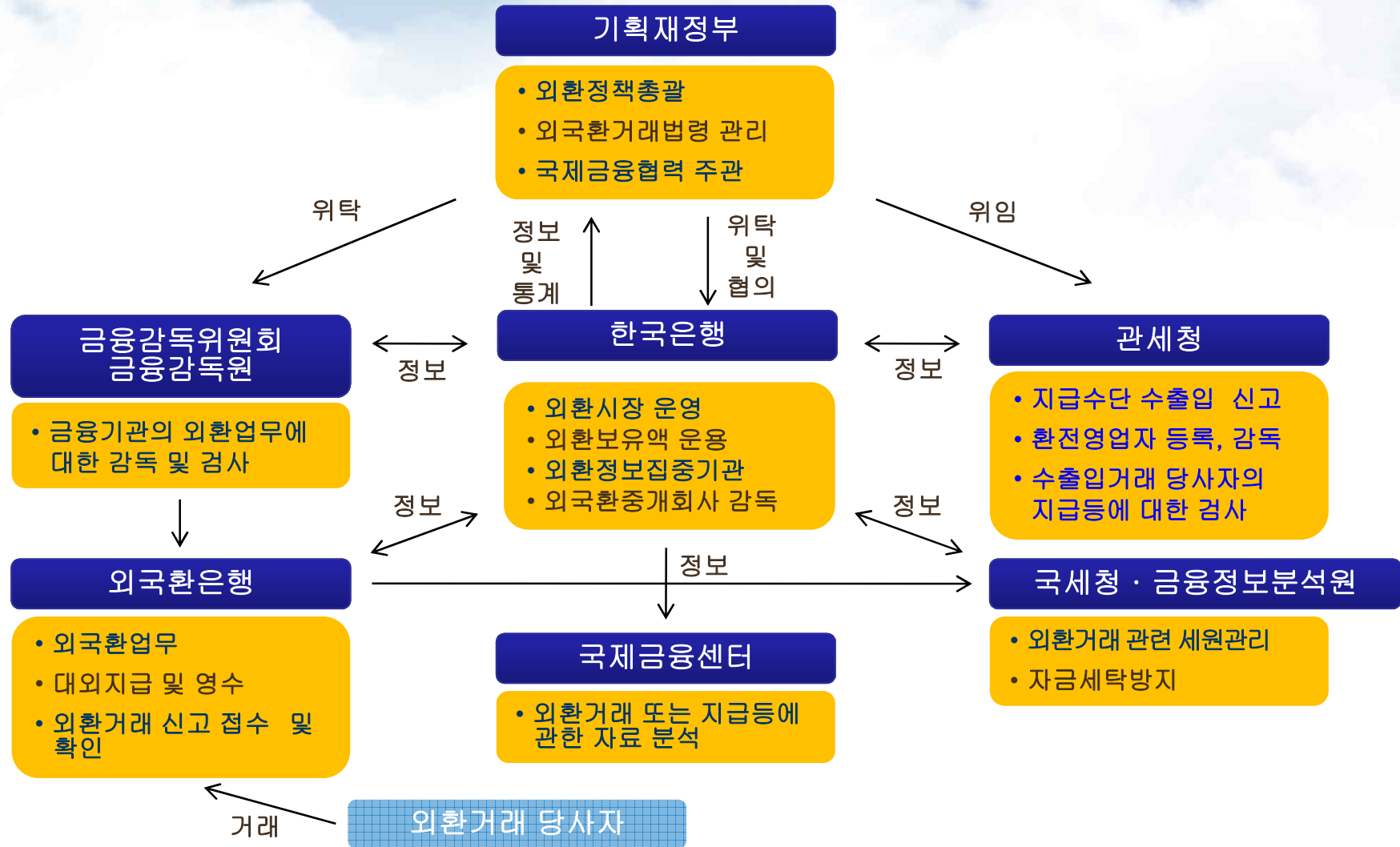
1-4.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

- ◆ 대상행위 : 거주자간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 비거주자간 거래
 - 대한민국내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
 -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거래 또는 지급이나 수령
 - 비거주자간 원화표시 거래
 - 거주자가 외국에서 국내의 재산·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 등
- ☞ (주의1)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행위뿐 아니라 거주자간 외환거래(환전, 외화 매매 등)와 비거주자간 원화거래도 대상행위에 포함된다
- ☞ (주의2)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은 단순히 외국환의 이동이 수반되는 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채무에 관련성이 있으면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래도 포함된다

1-5. 기관별 외국환관리 역할

- ◆ 기획재정부(외환정책 총괄, 법령 관리)
- ◆ 한국은행(외환시장 운용, 정보 집중, 외국환중개회사 검사)
-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금융기관과 거래당사자 검사)
- ◆ 외국환은행(외국환업무, 지급 및 수령)
- ◆ 관세청(지급수단 휴대수출입, 수출입관련거래, 환전영업자 검사)
- ☞ **사법경찰권 부여(수사)**
 - ◆ 국세청(세원관리, 역외탈세)
 - ◆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
 - ◆ 국제금융센터(외환정보분석기관)

1-5. 기관별 외국환관리 역할





2. 지급과 수령

1. 지급 · 수령 절차

2. 상계

3. 기간초과 지급 · 수령

4. 제3자 지급 · 수령

5. 은행을 통하지 않는 결제

2-1. 지급·수령 절차

◆ 외국환거래 지급·수령 절차 (법 제15조)

○ 외환거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별도의 신고·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국제평화·안전을 위한 조약·국제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만 허가 要

* UN·미국·EU가 지정한 금융제재대상(북한·이란 등) 중 기재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자와의 거래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기획재정부 고시) 참조

◆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 (규정 제4-2조)

○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령은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에 거래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급·수령의 원인거래가 외국환거래법이나 타법령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를 먼저 하여야함(자본거래 신고 여부 주의)

2-1. 지급·수령 절차

- ◆ 거주자의 지급·수령 절차 예외(규정 제4-3조)
< 거주자(외국인 제외)의 증빙서류 미제출 대상 ※ 확인은 받음 >
 - 신고대상이 아닌 지급으로
 - ① 연간 누계 미화 5만불 이하
 - ② 연간 누계 미화 5만불 초과거래 중 거래 내용과 금액을 외국환은행장이 확인 가능한 경우
 - ⇒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만 서류 제출 면제
 - 신고대상이 아닌 수령으로
 -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 이하인 경우
 - 전년도 수출(수입)실적 미화 5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의 수출(수입)대금의 수령(지급)
 - ⇒ 서류제출이 면제되어도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함

2-1. 지급 · 수령 절차

- ◆ **일반적** 외국환거래에 따른 결제(지급, 수령) 방법과 예외
 - ★ 일반적 방법과 다른 결제는 외국환거래법 16조에 따라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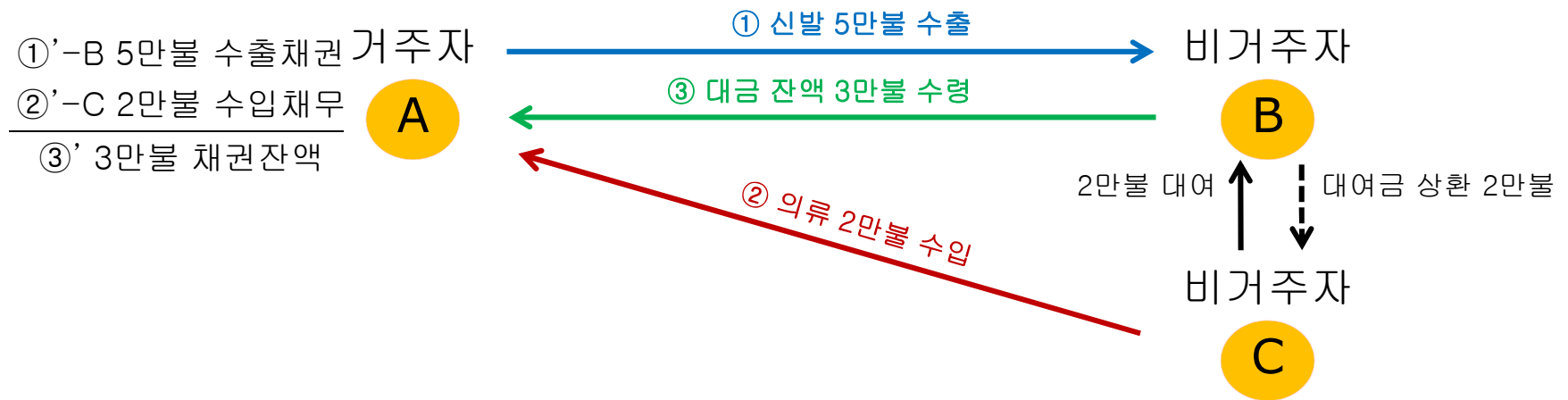
일반적 결제	예 외(신고 · 보고 대상)
○ 거래 <u>건별</u> 로 실제 <u>결제</u>	○ 상계에 의한 지급 등 (법 제16조제1호)
○ 거래 전후 <u>일정한 기간</u> 내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 (법 제16조제2호)
○ 당해 거래 <u>당사자간</u> 에	○ 제3자 지급등 (법 제16조제3호)
○ <u>외국환은행을 통하여</u>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 하는 지급 등 (법 제16조제4호)

2-2. 상계

◆ 양자간 상계 거래 예시



◆ 다자간 상계 거래 예시



2-2. 상계

- ◆ 거래의 결제에 있어 상호간 채권·채무를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거주자는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 서류 5년 보관
- ◆ 상계 : 일회적(양자간 일반상계, 다자간 상계 등 - 규정 제5-4조)
 -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 미화 5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
 - 위수탁가공무역, 연계무역에 의한 수출입 대금의 상계
 -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과의 상계 등
 - 신고기관 및 시기
 - 양자간 상계 : 외국환은행장 / 상계 前 또는 상계 後 1개월내
 - 다자간 상계·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 상계 : 한은총재 / 상계 前
- ◆ 상호계산 :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한 경우(규정 제5-5 ~ 5-7조)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신고(상호계산 신고서)

2-2. 상계

◆ 상계, 다자간 상계, 상호계산의 의미

- 상계란 거래 또는 행위에 따라 발생한 서로 다른 채권과 채무를 실제 결제 하지 않고 상호 합의하에 상쇄하여 회계적으로 결제 처리하는 것을 의미
- 상계 : 이미 발생한 별건의 채권, 채무를 상쇄하는 행위
- 다자간 상계 : A사가 B사에 대한 채권과 C사에 대한 채무를 일괄 상쇄하는 것
- 상호계산 : 앞으로 발생할 채권, 채무를 상계후 차액만 결제하겠다고 신고하고, 정해진 기간단위로(통상 1개월) 상쇄한 내역을 보고하는 것

[사례1] 수입신고 대금 결제 전에 같은 수입신고건의 '크레딧 메모'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 행위가 상계 신고대상인지?

☞ 수입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딧 메모(손실 보전)을 받은 금액을 수입대금에서 차감하여 지불한 것은

동일한 계약건에 대한 '지급금액 조정(변경) 사항' 으로 상계신고 대상 해당 않음

2-3. 기간초과 지급 · 수령

- ◆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규정 5-8조)
 - 미화 5만불 초과 수출대금 수령 (선수금 수령에 유의)
 - 본지사간 수출거래 : 사전수령/무신용장인수인도조건 3년초과후 수령
 - 비 본지사간 수출거래 : 1년 초과 사전수령 등
 - 수입대금 지급 (선급금 지급)
 - 계약건당 미화 5만불 초과 미가공 재수출 금 수입 : 30일 초과 지급
 - 계약건당 미화 2만불 초과 물품 : 수령전 1년 초과 송금방식 지급
- ◆ 대응수출입 이행의무(규정 5-9조)
 - 건당 미화 5만불 초과 수출대금 사전수령시 5-8조에서 정하는 기간내 수출 또는 반환하여야 함
 - 건당 미화 2만불 초과 수입대금 사전송금시 5-8조에서 정하는 기간내 수입 또는 반환하여야 함

2-3. 기간초과 지급 · 수령

◆ 기간초과 결제 신고 의무를 두는 이유

- ▶ 본지사간에 무역거래를 빙자하여 불법적인 자금지원, 음성적 자본거래, 밀어내기식 수출을 방지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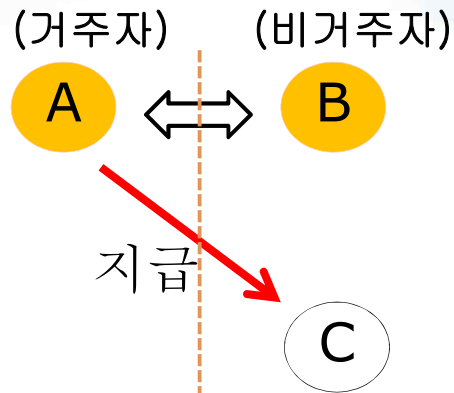
- 선급금 : 불법적인 지원, 일종의 대출 성격이 있음
- 선수금 : 해외법인의 자금을 선수금인 것처럼 반입한 후 변칙적 운용 가능

(사주 등 특정인의 특정한 목적에 유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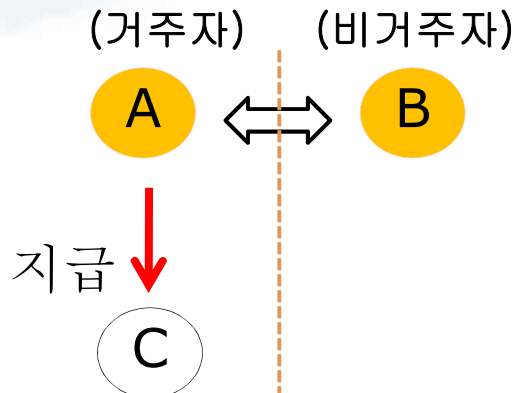
- ※ 수령의 의미 : 통상적으로 국내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 다만,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의 소유권 이전일을 수령일로 볼 수 있음

2-4. 제3자 지급 ·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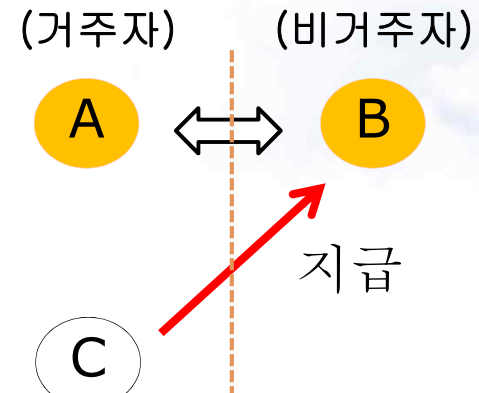
◆ 거주자(A)와 비거주자(B)간 거래에서



A가 3자지급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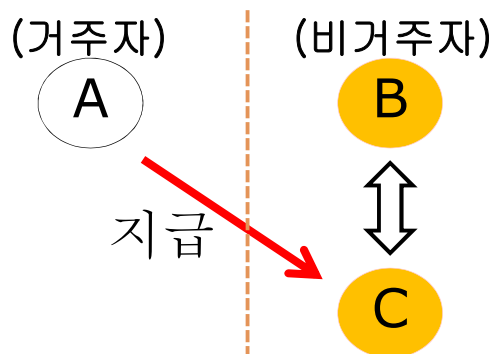


A가 3자지급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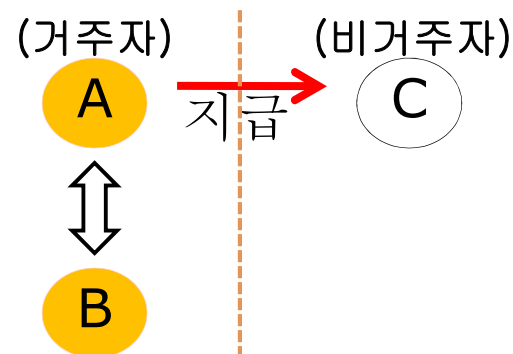
C가 3자지급 신고

◆ 비거주자 상호간(B, C) 거래



A가 3자지급 신고

◆ 거주자 상호간(A, B) 거래



A가 3자지급 신고

2-4. 제3자 지급 · 수령

- ◆ 원칙적 **한국은행총재 신고, 미화 1만불 이내 외국환은행장 신고**
- ◆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규정 5-10조)
 - 미화 5천불 이하의 제3자 지급 · 수령
 -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 비거주자로부터 수령
 -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
 -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자간의 외화채권의 이전을 포함)
 - 단순수입대행을 의뢰한 수입자(납세의무자)가 수입대금을 수출자(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2-4. 제3자 지급 · 수령

◆ ‘제3자 지급등’의 신고 의무가 있는 이유

- ▶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의 지급 등으로 거래를 종결하는 경우 불법적인 자본의 유출, 마약 등 불법자금의 세탁, 관세 등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신고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한은총재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거래당사자 결정 요소

- ▶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계약체결자를 의미. 다만, 계약서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① 주문서와 청구서 등 관련서류에 명시된 청구자 또는 수익자, ②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하자 등 분쟁의 책임자, ③ 그 외 거래 관련 서류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위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거래당사자 판단 기준 : ① 계약서 서명자, ② 주문서, 청구서에 명시된 청구인, 수익자, ③ 하자 등 분쟁책임자, ④ 정당한 위임관계가 형성된 자

2-4. 제3자 지급 · 수령

- ◆ [사례 1] 계약서(A), B/L상 SHIPPER(B), DEBIT NOTE/INVOICE(C), 실제 물품 제공자(D공장)일 경우 거래당사자?
 - ▶ 계약서상 명시된 A가 거래당사자 : 제3자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는 지급수단의 흐름을 규정하는 것이지 물품의 흐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물품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자로부터 수령하더라도(대외무역법상의 저촉여부는 별도) 대금(지급수단)을 계약의 당사자간에 주고 받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거래로 봄
- ◆ [사례 2] 계약서상 AGENT 등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 ▶ 계약서상 명시되어 합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AGENT 등은 대리인으로서 대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해석되며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도 제3자지급으로 판단

2-4. 제3자 지급 · 수령

◆ [사례 3] 회사 대표 명의로 송금하는 경우

- ▶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는 별도의 법적 실체로 구분되는 것임. 따라서 법인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대표 명의로 송금하는 경우(법인명의로 상대방 대표에게 송금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도 3자지급에 해당. 단,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동일시되므로 3자지급에 미해당

◆ [사례 4] 수출상이 국내에 개설한 대외계정, 혹은 수출상 명의 제3국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 ▶ 당사자간 거래로 인정되므로 3자지급에 미해당
- ▶ 거래당사자 명의만 일치하면 되고 거래국가까지 일치할 필요는 없다. 즉 어느 국가로 송금하는지 여부는 제한규정이 없음

2-5.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결제

- ◆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 / 수령이 원칙이며, 그외는 신고 대상
- ◆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규정 5-11조)
 - 거주자가 지급수단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해외여행자가 해외여행경비 등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 1만불 초과 해외여행경비는 출국시 세관신고 필요
 - 1만불 초과 유학경비, 해외체재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확인 필요
 -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신용카드 등으로 해외에서 여행경비등을 지급하거나, 인정된 거래 자금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등
- ◆ 상기 이외는 한국은행총재 신고

2-5.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결제

- ◆ [사례1]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출대금을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 비거주자가 수출대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미화 1만불 초과인 경우 입국시 관할세관에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거주자(수출자)는 수출대금 수령 전에 비거주자(수입자)가 동 신고를 필하도록 하여야 함
- ◆ [사례2] 물품을 수입한 후 수입대금을 현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를 현물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한국은행에 하여야 함. 현물로 영수하는 경우도 신고대상
- ◆ [사례3] 해외 수출자가 국내에서 대금을 수령하여 휴대반출 하는 경우
 - ▶ 국내 수입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신고를 하여야 하며, 비거주자는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거나, 세관장에게 증빙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입증 서류를 구비하여 확인 또는 신고

★<정리> 지급방법등 신고 요약

구 분	신고기관	신고 예외 금액
상계 - 다자간 상계 - 다국적기업 상계센터 상계 - 상호계산	외국환은행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총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미화 5천불 이하
기간초과 지급등	한국은행 총재	미화 5만불 이하 수출 미화 5만불 이하 미가공 재수출 금 수입 미화 2만불 이하 수입
제3자지급등(현물 영수) - 미화 1만불 이내	한국은행 총재 -외국환은행장	미화 5천불 이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등 - 해외여행경비 - 유학경비, 해외체재비, 이주비	한국은행 총재 -세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미화 1만불 이하



3. 위규 자율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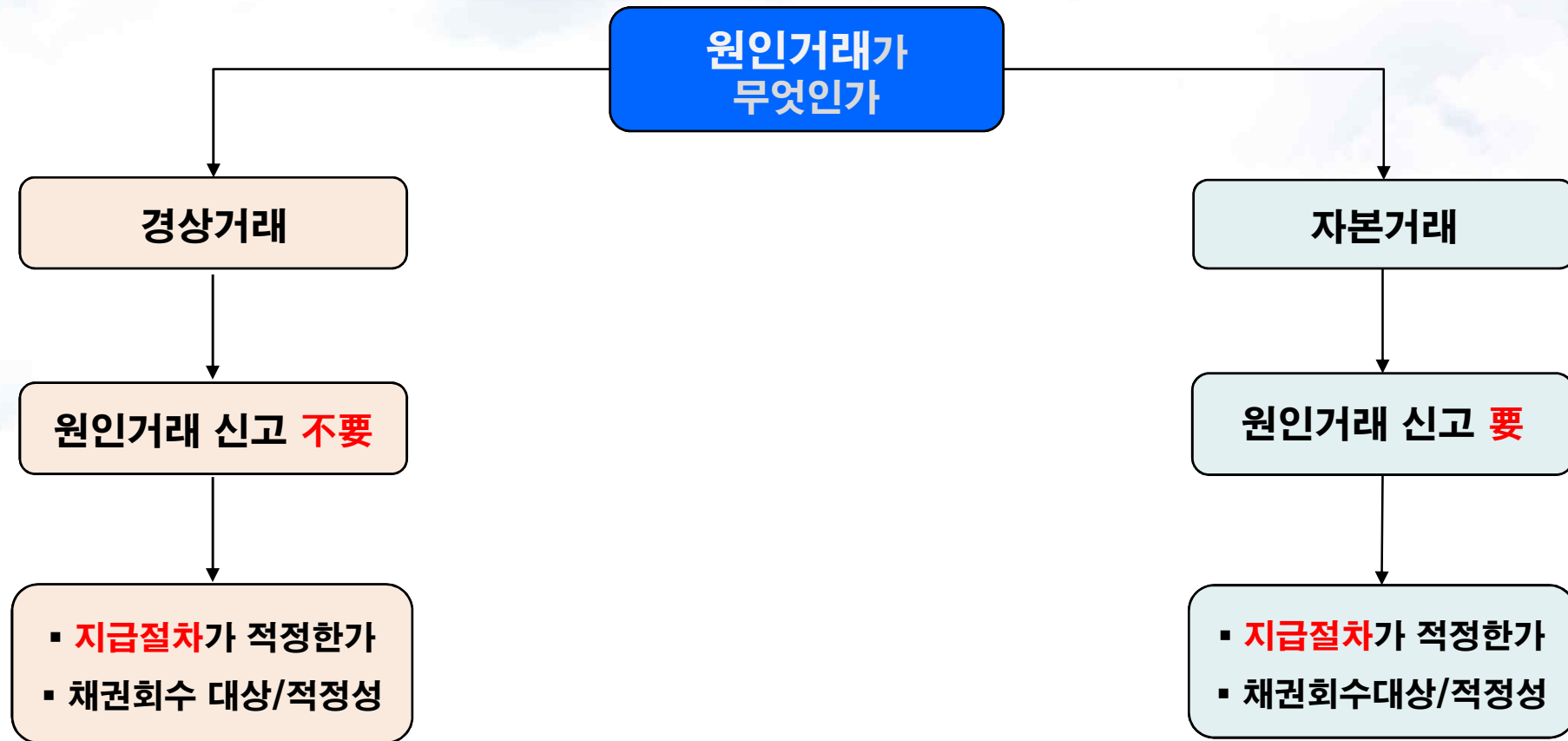
1. 상계

2. 3자지급

3. 기간초과지급 등

4.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

★ 외국환거래 적정성 체크



3-1. 상계

◆ Check 상계거래가 빈번한 채권·채무

거래유형	결제 대상	상쇄(차감)한 금액
① 수출입품 불량 보상비 처리	수입품 A의 대금 지급(채무)	이전 수입품 불량 보상비(채권)
		다른 수입품 B의 불량 보상비(채권)
	수출품 A의 대금 영수(채권)	이전 수출품 불량 보상비(채무)
		다른 수출품 B의 불량 보상비(채무)
② 위·수탁 가공거래	위탁가공품 수입대금 지급(채무)	가공품과 무관한 원자재 수출대금(채권)
		기술지원비·상표 사용료 등(채권)
	수탁가공품 수출대금 영수(채권)	가공품과 무관한 원자재 수입대금(채권)
		기술지원비·상표 사용료 등(채무)
③ 수입자의 현지영업 수반 거래	수입물품 대금 지급(채무)	국내 판매에 따른 리베이트(채권)
		수입물품의 국내 수리비(채권)
	수출물품 대금 영수(채권)	해외 판매에 따른 리베이트(채무)
		수출물품의 해외 수리비(채무)
④, ⑤ 수출입 거래에 특정조건 수반	수입물품 대금 지급(채무)	조건에 따라 이전 수입품에 적용된 가격 할인 보상비(채권)
		이전가격 정책에 따른 사후보상(채권)
		전용용기 유상수출비용(채권)
	수출물품 대금 영수(채권)	조건에 따라 이전 수출품에 적용된 가격 할인 보상비(채무)
		이전가격 정책에 따른 사후보상(채무)
		전용용기 유상수입비용(채무)

3-2. 3자지급

◆ Check 3자지급 신고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한 거래

- ① Invoice나 청구서에서 해외거래처가 별도로 수취인을 지정하는 경우
- ② 수입품의 불량에 따른 클레임 제기 대상(보상청구 대상)과 물품대금 수취인이 다른 경우
- ③ 해외거래처의 대표(개인)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
- ④ 제조목적의 합작회사 설립에 공동 투자한 해외투자법인에게 물품대금이 지급되는 경우
- ⑤ 물품 대금수취인이 수출전문업자 또는 중개업자인 경우로 수수료 외 물품대금이 함께 지급
- ⑥ 물품은 A국가의 본사에서 수입되는데, 물품 대금은 국내 다른 국가에 있는 지역 총판 또는 지사에 지급되는 경우
- ⑦ 해외에서 직접 조달되는 특정 원자재를 지정하는 임가공거래로, 임가공업체에 임가공비와 원자재비용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3-3. 기간 초과 지급 등

◆ Check 기간 초과 지급 신고 대상 여부 확인 거래

거래유형	결제 · 선적 방법
① 미화 5만불 초과 수출	본지사간 D/A, O/A거래로 물품선적 또는 환어음 일람 후, 3년이 지난 후에 대금을 영수
	본지사간 거래 중 D/A, O/A 거래가 아닌 것으로 수출대금을 먼저 영수하고 물품 선적
	본지사간 거래가 아닌 거래로, 수출 대금을 먼저 영수하고, 1년이 지난 후에 물품 선적
② 미화 2만불 초과 수입	수입대금을 지급 후 1년이 지난 후에 선적 (선박 · 철도 · 항공기 · 산업설비로 2백만불 이하 지급은 제외)
③ 미화 5만불 초과 재수출 금 수입	선적서류 또는 물품을 수령하고 30일 지난 후 지급
	내수용으로 30일 초과 연지급수입한 금 수출

당초 결제시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선적전에 대금이 결제된 경우,
1년뒤 선적여부를 확인하고 사후 보고 대상 여부 점검

3-4.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

◆ Check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 신고 대상 확인거래

구분	유형
수입대금 지급	① 국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보유한 해외 계좌에서 수입물품대금을 지급
	② 우리 나라에 입국한 해외거래처 임직원에게 수입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직접지급
	③ 수입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물물교환)
	④ 수입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해외거래처에 현지의 창고나 사무실을 무상 임대
수출대금 영수	⑤ 수출물품 대금 대신 해외거래처가 보유한 다른 물품을 무상 제공 받음(물물교환)
	⑥ 수출물품 대금 대신 해외거래처가 보유한 국내 창고나 사무실의 무상으로 제공 받음



4. 기타 외국환거래

1.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2. 자본거래

4-1.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 지급수단등 : 지급수단, 증권

◆ 신고면제(규정 6-2조 제1항)

-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 수출/ 지급수단등 수입
- 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장 수입
- 사전에 지급등의 방법 신고등을 한 자가 그 허가나 신고된 내용에 따라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수입한 범위내 또는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 등
- 거주자가 수출대금 수령을 위해 외화수표를 휴대수입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등

4-1.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세관 신고사항(규정 6-2조 제2항)

- 미화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

* 별지 제6-1호 서식 : 외국환신고(확인)필증

◆관할세관 신고사항(규정 6-3조)

-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와 외국환신고필증 발급 대상을 제외하고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두 세관장 신고
- 신고양식이 다르며 이 경우에는 지급증빙서류를 제출

* 별지 제6-2호 서식 :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

◆세관장의 수출입 제한 조치 등(규정 6-4조)

- 입출국하는 자의 지급수단등 수출입신고등 여부 확인 의무
- 세관장은 지급수단 수출입이 부적절한 경우 제한 조치 가능

4-2. 자본거래

◆규제방식

-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원칙)**
- 자본거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06.1.1 ~)

- **해외부동산 취득 등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수리제로 운영**

◆자본거래의 유형

- ① **예금 및 신탁거래**
- ② **금전대차** 및 채무의 보증거래
- ③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예약
- ④ 증권의 발행
- ⑤ 증권의 취득
- ⑥ 파생금융거래
- ⑦ **부동산 거래**
- ⑧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 ⑨ 기타 자본거래
- ⑩ 현지금융
- ⑪ **해외직접투자**
- ⑫ 외국인 직접투자 등

4-2. 자본거래

거래 종류	구분	대상	신고기관
해외예금거래	사전 신고	5천불 초과 5만불 이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5만불 초과	한국은행
	사후 보고	해외에서 1만불 초과 입금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30일이내)
		연말 50만불 초과 잔액(법인이 아닌 경우 10만불 초과)	한국은행(다음연도1월이내)
금전대차	차입	영리법인의 외화차입(1년 누적 3천만불 이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영리법인의 외화차입(1년 누적 3천만불 초과)	기획재정부
		비영리법인, 개인의 외화 차입	한국은행
		원화 차입(10억원 이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원화 차입(10억원 초과)	기획재정부
	대출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한국은행
		현지법인에 대한 1년 미만 대출	외국환은행
해외부동산취득	소유권	체재목적 주택 취득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주거 이외 목적 부동산 취득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임차권	보증금 1만불 초과	지정거래외국환은행



5. 외국환거래법상 처분

1. 행정처분

2. 과태료

3. 벌칙

5-1. 행정처분

- ✓ **적용대상** : 일반거래당사자 등
(지급절차 위반, 지급방법신고 위반, 자본거래신고 위반 등)
- ✓ **처분내용** : 경고 또는 거래정지 제한 등
- ✓ **경고**
 - 신고사항에 정하여진 기한 경과 후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위반금액이 1만불(자본거래신고는 2만불) 이하의 거래 또는 행위
- ✓ **거래정지·제한**
 - 최근 5년 이내에 신고 등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1년 이내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 정지/제한
- * 거래정지·제한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벌칙(1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 과태료(300만원)

5-1. 행정처분

✓ 거래정지·제한 기간(시행령 별표3의2)

○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로 적발된 경우

위반행위	위반금액	2회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15조 지급절차 위반(허위증빙 제외) ➤ 법 16조 지급등 방법 신고 위반(외국환은행장신고 대상) ➤ 법 18조 자본거래 신고 위반(외국환은행장신고 대상) 	1억원 이하	1개월	3개월
	1~3억원	1개월	3개월
	3~5억원	3개월	6개월
	5억원 초과	6개월	12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15조 지급절차 위반(허위증빙) ➤ 법 16조 지급등 방법 신고 위반(한은신고대상) ➤ 법 18조 자본거래 신고 위반(기재부,한은,금감원신고 대상) 	1억원 이하	1개월	3개월
	1~3억원	3개월	6개월
	3~5억원	3개월	6개월
	5억원 초과	6개월	12개월

5-2. 과태료

✓ 외국환거래법 16, 17, 18조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변동

구분	'09.2.4 ~ '11.7.30	'11.8.1 ~ '16.3.21	'16.3.22 ~ '16.6.2	'16.6.3 ~
16조	건당 5억원 이하	건당 25억원 이하		
17조	과태료 부과 대상 없음(전부 형사입건)			건당 1만불 초과 3만불 이하
18조	건당 10억원 이하	건당 50억원 이하	건당 10억원 이하	

- ✓ 과태료 부과 기관 : 관세청(세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 의견진술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
- ✓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 과태료 부과
- ✓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 - 과태료 재판 진행
- ✓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41조 별표4)는 위반 행위 당시 기준 적용

5-2. 과태료

✓ 외국환거래법 15, 16, 17, 18조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일 '17. 7. 18.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은 2배로 상향

위반행위	~'17. 7. 17.	'17. 7. 18. ~
법 15조 지급 절차 위반	50만원과 1% 중 큰금액	100만원과 2% 중 큰금액
법 15조 지급 절차 위반(허위증빙)	100만원과 2% 중 큰금액	200만원과 4% 중 큰금액
법16조 지급방법 미신고(외국환은행신고 대상)	50만원과 1% 중 큰금액	100만원과 2% 중 큰금액
법16조 지급방법 미신고(한은신고대상)	100만원과 2% 중 큰금액	200만원과 4% 중 큰금액
법 17조 지급수단 수출입 미신고	5%	5%
법 18조 자본거래 미신고(외국환은행신고 대상)	50만원과 1% 중 큰금액	100만원과 2% 중 큰금액
법 18조 자본거래 미신고(한은,기재부 신고 대상)	100만원과 2% 중 큰금액	200만원과 4% 중 큰금액
법 16조, 18조 사후보고 의무 위반	200만원	100만원과 2% 중 큰금액

○ '17. 7. 18.이후 발생한 여러개의 위반행위가 일시에 적발되는 경우, 전체 위반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총 과태료는 100만원 or 200만원

5-2. 과태료

✓ 외국환거래법 15, 16, 17, 18조 위반시 과태료 감경

○ 위반행위일 '17. 7. 18.을 기준으로 과태료 감경 비율 대폭 상향

감경 요건	~'17. 7. 17.	'17. 7. 18. ~
위반 행위 자진신고	20% 감경	50% 감경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0% 감경	50% 감경
자본거래 신고위반이나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0% 감경	50% 감경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0% 감경	75% 감경

○ '17. 7. 18.이후 발생한 여러개의 위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고, 중소기업이며, 의견진술기한내 자진납부하면 최대 80% 감경됨

☞ 예) 중소기업이 1억원의 3자지급 미신고를 자진신고한 경우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기준 금액 : 1억원 x 4% = 400만원
- 자진신고 및 중소기업 감경 75%를 적용한 부과예정금액 : 100만원
- 의견진술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추가 감경된 최종 납부금액 : 80만원

5-3. 벌칙

✓ 벌칙 내용

○ 신고등 위반(제29조)/지급방법·자본거래·지급수단(3만불 초과)수출입

신고 위반, 최근 2년내 법 제32조제1항의 과태료 처분 받은 자

• 1년 이하의 징역

• 1억원 또는 목적물 가액의 3배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가능

✓ 몰수·추징 : 위반행위로 취득한 외국환, 기타 증권, 귀금속, 부동산 등

✓ 양벌 규정 : 법인 등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한 위반시 법인 등도 처벌

✓ 미수범 처벌 :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위반(제17조)은 미수범도 처벌

✓ 적용법령 : 벌칙 적용은 위반행위 당시 법령을 적용



감사합니다.